

제안요청서

- GB 관리·활용 등을 위한
조경수 거래가격 조사공표 방안 연구 -

2024. 4.

국토교통부

목 차

I. 연구용역 개요	1
II. 과업내용	2
III. 제안서 작성방법	14
IV. 연구용역기관 선정방법	15
V. 유의사항	18
VI.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평가방법	19
VII. 제안 관련 서식일람	22

I. 연구용역 개요

1. 용역명 : GB 관리·활용 등을 위한 조경수 거래가격 조사공표 방안 연구

2. 용역의 배경 및 목적

-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고시 중단 후 시장 혼란 가중으로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국토부 공표 요청
- GB 생활공원, 훼손지복구사업의 조경공사 품질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우리부 주도 조경수목 가격공표 방안 탐색 필요
- 조경수목가격 정상화와 조경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경수 가격 조사·공표 체계구축 방안 마련 연구 추진

3. 예산 : 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과업내용

① 세부 과업내용

1. 기존사례 및 현황 조사 및 분석

- 기존 조달청 조정수목 가격고시 운영내용 분석 및 현황 파악
- 수목 가격공표 관련 국내(조달청, LH, 서울시)·외 사례 조사·분석
 - 가격조사·공표 수행내용, 기준, 절차 등 선행사례 조사·분석
- 타 공사 주요재료 원가계산 및 부동산, 원목 등 공표 사례 조사·분석

2. 조정수목 가격 조사기준 마련

- 조정수목 가격조사 대상 수목·규격 선정기준 제시
 - 수목거래량·비율·금액 등 대상선정 기준점 연구
 - 조정공사에 자주 반영·사용되는 수종·규격 조사
 - 단가조사내역 작성지침 마련
- 조정수목 가격조사 대상 생산·유통업체 선정기준 제시
 - 대상업체별 조정수 재배면적, 취급 종수, 판매액 등에 따른 기준 제시
- 신뢰성 있고 공정한 수목가격 조사방법 제시
 - 직·간접조사로 최대한의 가격정보 수집, 신뢰성 확보 조사방법 탐색

3. 조정수목 가격 공표 제도기반 구축

- 조정수목 거래가격 공표를 위한 연간 계획 제시
 - 공표대상선정, 가격조사, 심의, 의견수렴을 포함한 연간계획안 마련

- 조사·공표 절차 내 전문가 심의 및 국민 의견수렴 과정 마련
 - 대상선정, 가격공표 등 심의·의견수렴 필요 단계 검토
 - 조정수가격조사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방안 제시
 - 국민 의견수렴절차 및 의견수렴 후 검증절차 마련
- 가격고시관련 법령 검토 및 연도별 수행 제도기반 마련
 - 관련법률 및 행정규칙 검토 후 국토부 가격고시 근거·기반 탐색
 - 국토부 주관 매년 조정수 가격고시 수행 제도기반(행정규칙안) 제시

4. '24년도 조정수목 가격 시범 조사·공표

- 기존 조사 및 연구 내용 기반 거래가격조사 시범 시행 후 공표
 - 지역별 생산·유통업체 대상 거래가격 조사
 - 조정수목 단가조사서 작성 및 단가조사내역 데이터 구축
 - * 단가조사양식은 [별표1], [별표2]의 서식을 준용
 - 조사가격 등 심의필요 사항 심의 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공표

②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은 과업내용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본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6) 본 과업에서 취득한 사례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7)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8)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자문회의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9) 과업수행자(수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한 매월말 진도내용을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세부과업지침

1)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과업 및 용역비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4) 자문회의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 할 수 있다.
- 자문회의 개최시기(일정) 및 자문사항은 연구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5) 성과품 소유

- 용역결과의 지식재산권은 국토교통부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용역결과의 지식재산권은 국토교통부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국토교통부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9) 특허권의 사용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0) 기타사항

-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반영한다.
-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③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표지, 양식 등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출성과품

구 분	제 출 시 기	제 출 수 량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 후 10일 이내	5부	세부과업수행계획
중간보고서	준공 90일 전까지	5부	과업의 중간연구 결과
최종보고서	준공시	30부, CD 1식	과업의 최종결과

※ 모든 보고서는 보고서 파일을 CD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보안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국토교통부훈령 제1656호, 2023.9.12.)」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 시에 우리부에 전량 납품 후 납품 물량 외 추가발행을 금지하며, 불량·폐지 등은 전량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은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가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7.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9.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3.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예정공정표

기간(월) 세부내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기존사례 및 현황 조사·분석									
조경수목 가격 조사기준 마련									
조경수목 가격 공표 제도기반 구축									
‘24년도 조경수목 가격 시범조사·공표									
주요일정	착수 보고	자문 회의	업무 협의	자문 회의	중간 보고	자문 회의	심의	업무 협의	최종 보고

[별표 1] 조경수목 거래가격조사서

1. 조사일시 : 20

2. 조사지역 :

3. 조사업체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화	
e-mail			Fax	
농장	주 소			
	포지면적		관리담당자	

4. 조사가격 개요 : 가격유형, 공사명, 수도방법 등

5. 조사자(출장자) :

소 속	직 급	성 명	날 인

6. 단가조사 내역 : 별도 첨부

[별표 2] 조정수목 거래가격조사내역서

(단위 : 원)

[illegible]

* 공급가 기준(부가가치세 제외)

III. 제안서 작성방법

1.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20매 이내로 작성하며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함
-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제출

2. 가점요인

- 용역수행을 위한 접근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용역추진 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

3. 감점요인

- 직접 관계가 없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자료를 첨부한 경우
- 실효성이나 실행가능성이 없는 내용 등

4. 추진일정

- 착수보고서 제출 :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하고, 준공 전에 제출

IV. 연구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 출 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전화 044-201-3754)
- 기타 관련서류는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입찰 참가자격(아래 '가~라'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단 비영리법인은 '가~다' 조건을 충족하면 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자
-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 제안서의 평가 및 업체 선정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의 비중으로 하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종합순위를 정함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용역수행업체 선정

☐ 보안준수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 제안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단, 심의평가의 경우는 예외)

☐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계약된 기관(업체)의 제안서는 제안 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가 됨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고,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안설명을 요구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V. 유의사항

1. 가격입찰방식(전자입찰)

- 가격입찰 방식은 전자입찰이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

2.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서』를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3. 보안준수 및 보안서약서의 제출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시 제출하여야 함

VI.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평가방법

① 제안서 내용평가

□ 평가항목

평가요소		체크포인트	평가방법	점수
1	기관평가	- 재무구조·경영상태 - 용역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현황	계량평가	주1)
2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계량평가	주2)
3	과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비계량평가	주3) ⑤④③ ②①
4	추진체계 및 일정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절성 -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의 적절성	"	주3) ⑤④③ ②①
5	산출물 평가	- 일정별 산출물과 전체내용의 적절성 및 정책적 시사점 - 연구 성과물 활용	"	주3) ⑤④③ ②①
6	투입인력 평가	-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수행경험, 학력 등 - 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절성	"	주3) ⑤④③ ②①
7	기타항목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제시	"	주3) ⑤④③ ②①
계				

주 1) 계량평가(10)

- 재무구조·경영상태(5)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A1, A2+, A20, A2-, A3+, A30, A3-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5
BB+, BB0, BB-	B+, B0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것만 인정

④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 경영상태 :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가

[예] (A사 점수 × 지분율) + (B사 점수 × 지분율) ...

- 연구인력 보유현황(5)

구 분	매우우수 (10명 이상)	우수 (8명 이상)	보통 (6명 이상)	미흡 (6명 미만)
평 점	5	4	3	2

* 공고일 기준으로 본 과업과 관련된 전공 석사·박사, 변호사 등 연구인력, 전문 인력 보유 수

주 2) 계량평가(10)

- 징계회수 : 0회(10), 1회(8.5), 2회 이상(7)

주 3) 비계량평가(80)

- 용역수행 정도에 따라 아래 점수 비율로 배분하여 합산평가

구 분	배 점	평가 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과업 접근방법	20	20	16.5	13	9.5	6
추진체계 및 일정	15	15	12	9	6	3
산출물 평가	15	15	12	9	6	3
투입인력 평가	15	15	12	9	6	3
기타항목	15	15	12	9	6	3

※ 1. 매우우수:⑤ 2. 우수:④ 3. 보통:③ 4. 다소미흡:② 5. 미흡:①

□ 평가기준(배점기준)

평가요소		체크포인트	점수
1	기관평가	- 재무구조·경영상태 - 용역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현황	10
2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10
3	과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20
4	추진체계 및 일정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절성 -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의 적절성	15
5	산출물 평가	- 일정별 산출물과 전체내용의 적절성 및 정책적 시사점 - 연구 성과물 활용	15
6	투입인력평가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수행경험, 학력 등	15
7	기타항목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제시	15
계			100

□ 평가점수 산정

○ 점수 : 내용평가득점 × 80%

※ 내용평가 득점은 업체별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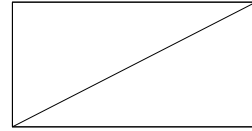
② 제안서 가격 평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가격 평가 (배점한도 20%)

VII. 제안 관련 서식일람

1. 과업제안서(표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3.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4. 연구진 이력사항
5. 보안서약서
6. 청렴계약서

<양식 1>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GB 관리·활용 등을 위한

조경수 거래가격 조사공표 방안 연구

업체명 : (인)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매출액	2021년	2022년	2023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징계사항			

〈양식 3〉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연령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주) 1.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